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제 주 4 · 3 사 건 진 상 규 명 및 희 생 자
명 예 회 복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4·3사건으로 인한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 정정 관련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정정범위 확대취지에 맞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변경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대상의 확대(안 제13조제1항)

- 기존의 ‘희생자’로 되어 있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‘희생자’를 삭제하고, 신청인의 추가 제출서류 등을 규정
-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맞게 신청·접수의 주체를 정비

나.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결정 절차의 구체화(안 제13조제3항)

- 가족관계 작성(정정)을 위해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 기간을 실무위원회가 요청을 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변경

다.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(안 제13조제5항, 제6항, 제7항)

- 가족관계의 정정 결정에 따라 신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,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

라.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신청서 개정(별지 제7호 서식)

- 정정 대상자의 확대를 반영하여 서식명을 수정하고 기재란을 추가하는 등 신청서를 변경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”를 “가족관계등록부”로, “위원회에”를 “실무위원회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
2.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대상자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한다)
3. 희생자의 제적등본(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)
4.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대상자와 희생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

제13조제3항 중 “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”을 “실무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의견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·의결을 요청하고, 위원회는 요청받”으로, “심의·의결하고,”를 “심의·의결하고”로, “지체 없이

신청인에게 통지”를 “실무위원회에 통보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
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
통지해야 한다.

제13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(정정) 신청을 받은 경우 실무
위원회는 신청·접수 사실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일
정기간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
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무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
있다.

⑦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
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결정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
신청인	성명[한글/한자]		주민등록번호
	주소		
	희생자(대상자)와의 관계 의		전화번호
희생자	성명[한글/한자]	생년월일	성별 [] 남 [] 여
	희생자 명부번호	희생자 결정일	
	당시 본적/호주 (현재 등록기준지)		
대상자	성명[한글/한자]	주민등록번호	성별 [] 남 [] 여
	등록기준지		
	주소		
	희생자와의 관계 의		전화번호
신청내용	신청구분	[]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[]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	
	등재(정정)할 사항		

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(정정)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.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대상자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) 3. 희생자의 제적등본(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) 4. 그 밖에 희생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희생자 결정통지서 및 유족 결정통지서	

유의사항

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(정정)할 경우 신분관계 또는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) ① 법 제1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<u>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결정 신청서</u>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<u>위원회</u> 에 제출해야 한다.	제13조(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가족관계등록부</u> ----- ----- ----- <u>실무위원회</u> ----- --.
1. <u>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</u> <u>가.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</u> <u>나. 희생자의 제적등본(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)</u>	1. <u>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</u>
2. <u>희생자 결정통지서와 유족 결정통지서</u>	2. <u>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대상자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한다)</u>
<u><신 설></u>	3. <u>희생자의 제적등본(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</u>

<신 설>

② 삭 제

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·의결하고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 <후단 신설>

④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를 제출해야 한다)

4.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대상자와 희생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

③ -----
실무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의견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·의결을 요청하고, 위원회는 요청받--- 심의·의결하고 --- 실무위원회에 통보---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(정정) 신청을 받은 경우 실무위원회는 신청·접수 사실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일정기간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신청에 대하여 의의가 있는 자는 위원회가 정

<신 설>

하는 방식에 따라 실무위원회로
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⑦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부를
작성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위
원회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
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
정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258